

# 개.고양이 휴대 입국시 동물검역 안내문

(2012.12.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

한국으로 개, 고양이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국산 인 경우

휴대한 개, 고양이가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국산인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 이식 번호가 기재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역관의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당일 개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았거나 마이크로칩 이식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등으로 인하여 검역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광견병 비발생지역(OIE 기준에 의함) >

일본, 대만,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윌리스프투나, 도미니카공화국,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아일랜드, 피지제도, 싱가포르, 자마йка, 영국

## ◎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광견병 발생국가에서 90일 이상인 개,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는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인정됩니다.

※ 광견병 항체가 국제공인검사기관 안내

[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pets/approval\\_en.htm](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pets/approval_en.htm)

국내 입국 후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번호와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기재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역관의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당일 개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았거나 마이크로칩 이식번호가 다른 경우 또는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하인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또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등으로 인하여 검역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이크로칩이 국제표준규격과 다른 경우 ▶

마이크로 칩은 국제표준규격(ISO11784 또는 11785)에 따른 것을 이식해야 하고 만약 국제표준규격과 다른 것을 이식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판독기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 개, 고양이 수입 사전신고

한국으로 개, 고양이를 5두 이상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QIA)에 제출하여 동물검역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추가 증명사항

호주에서 고양이를 휴대하거나 말레이시아에서 개, 고양이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에 헨드라바이러스(Hendra virus) 및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의 비 발생 증명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비 발생 증명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역기간이 21일 연장됩니다.

## ◎ 신청서류 : 동물검역신청서(붙임 참조)

### 개, 고양이 검역 관련 문의처

□ 인터넷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웹사이트 <http://www.qia.go.kr>

- 인천공항(여객청사) : 82-32-740-2660~1
- 인천공항(화물청사) : 82-32-740-2680
- 김해공항 : 82-51-971-1925
- 김포공항 : 82-2-2664-2601
- 무안공항 : 82-62-975-6033
- 청주공항 : 82-43-273-0586
- 대구공항 : 82-53-982-5096
- 제주공항 : 82-64-746-0761
  
- 인천항 : 82-32-722-8238
- 부산항 : 82-51-600-6242
- 군산항 : 82-63-460-9430
- 평택항 : 82-31-8053-7707
- 광양항 : 82-61-798-4924
- 속초항 : 82-33-635-9125
- 강릉항 : 82-33-662-2074

[붙임]

동물검역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6.15>

(앞 쪽)

동물검역신청서 (APPLICATION FOR ANIMAL QUARANTINE)		처리기간
		뒤쪽참조
①신고번호		②신고일 (Date)
③신고기관		④B/L번호 (B/L No.)
⑤입항일 (Date of arrival)		⑥선(기)명 (Name of ship or flight)
⑦수입 화주 (Consignee)	성명 (Name)	상호 (Company name)
	주소 (Address)	
⑧수출자 (Consignor)	성명 (Name)	⑨수출국 (Country of export)
	주소 (Address)	
⑩거래 품명 (Species and breed)		⑪모델·규격 (Sex, Age, color, etc.)
⑫수량 (Number of head)		⑬금액 (Total cost)
⑭도착항 (Port of arrival)		⑮생산국 (Country of production)
<16>선적항 (Port of shipping)		<17>선적일 (Date of shipping)
<18>담당자		
<p>위와 같이 동물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p> <p style="text-align: center;">년(Year)      월(Month)      일(Date)</p> <p>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주소 :</p> <p>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p> <p style="text-align: center;">Address :</p> <p>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p>		
<p>※ 구비서류 :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p>		<p>수수료</p>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p>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